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2월 1일 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년 12월 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1995년 3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남승운)

가.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6호 94. 2. 1) 개정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추진 등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로점용허가 수수료의 수입구분을 개정하였음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음
-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 소유별로 구분 징수하도록 하였음
 - 노폭 20m이상 도로의 과태료는 시수입
 - 노폭 20m미만의 도로의 과태료는 구수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므로 자치구에 위임된 관련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구와 시로 구분 이원화되었던 것을 구수입으로 일원화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며 부과대상을 노폭에 따라 시와 구수입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
----------	-----

제출년월일 : 1994.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도로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6호, '94. 2. 1) 개정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추진 등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구수입으로 함(안 제8조)
 - 도로소유별로 시·구 수입→구 수입으로 일원화
- 나.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의 2)
 - (1) 징 수 대 상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도로점용 공사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도로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과태료-50만원 이하
 - (3)과태료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함.
- 다. 과태료의 수입구분을 도로소유별로 구분징수(안 제10조)
 - 도로폭 20m이상도로 : 시수입
 - 도로폭 20m미만도로 : 구수입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도로법 제86조 2, 도로법시행령 제37조 3, 도로법시행규칙 제3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합의결과 의견 없음
- 라. 기 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1항중 “건설부령이 정하는”을 “점용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영등포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10조(세입구분)중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한다.

제11조(징수교부금) 제1항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한다.

〈별표1〉 제1호 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를 “송전탑·변압기·저장고·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기타”로 하고 동표 비고란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u>건설부령이 정하는</u>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점용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영등포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p> <p>제8조의 2(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u>별표3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u>·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 3.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